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실보험사 계약 강제이전 시 계약조건 변경 근거 마련 >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81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부실보험사 계약 강제이전 시 계약조건 변경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3. 18.
3. 회 부 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Ⅲ. 검토의견: 부실보험사 계약 강제이전 시 계약조건 변경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 처분을 하여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관한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u>
⑤ (생략) 제14조(행정처분) ① ~ ⑦ (생략)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u>본다</u>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행정처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u>보며,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u>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u>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u>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인수금융기관이 승계한다.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현행법 제10조¹⁾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 정지,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의 이전 등을 권고·요구·명령하는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14조²⁾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3. 12.]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게

전의 결정,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하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음.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금융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4제5항), 계약이전 결정 공고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 등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간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

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12.>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1999. 5. 24.>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개정 2010. 3. 12.>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 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2.>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12.>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3. 12.>

[제목개정 2010. 3. 12.]

한 내용”으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4조의2제3항³⁾). 즉,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계약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없이 계약이 유지됨.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그동안 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고, 지난 1998년 이후 부실보험회사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사례는 모두 법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졌음.

이 법에 따른 계약이전은 지난 1998년 이후 총 12차례 이루어졌고⁴⁾, 최근 사례로는 현재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사례가 있음⁵⁾.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4) [참고자료 1] 부실보험회사 정리현황 참고

5) [참고자료 2] 2025. 5. 14. 발표한 <MG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MG손해보험 향후 처리방안> 중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 세부내용”

□ 보험계약이 이전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 강제이전(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이전)과 「보험업법」에 따른 임의이전(「보험업법」 제10조6))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계산의 기초 변경, 보험금·보험료의 감액, 계약조항의 변경 등이 가능하나(「보험업법」 제143조7)), 이 법에 따른 강제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근거가 미비하고, 특히, 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이 종전과 동일하게 승계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보

6) 「보험업법」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7) 「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 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3. 계약조항의 변경

험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을 그대로 이전받아야 하는 위험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도 제기됨.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부담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음. 최근 MG 손해보험의 계약이전 과정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았으나⁸⁾, 지난 1998년 이후 이 법에 따른 12건의 계약이전 중 10건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투입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 부실 보험사에 대한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외국의 경우,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효력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리 절차를 진행하되,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⁹⁾.

-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

8)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적자금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됨.

9)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2020.9.,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p.38

으로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시장 안정 역할이 주된 목적이
라는 점, 부실보험회사 보험계약의 강제이전 시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부실로 인해 입게
되는 보험가입자의 피해 방지와 이익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려는 취지라는 점,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일상의 각종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변경이 개별 보험가입자에
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부실경영 보험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
화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상의 건강, 안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계약자 보호 필요성, 보험산업에의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정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정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처
02)6788-5104

【참고자료 1】 부실보험회사 정리 현황

(단위 : 억원)

회사명	부실 결정일	정리방식	자금지원		비고
			금액	재원	
BYC생명	'98.8.11.	전부계약이전	2,411	상환기금	교보생명으로 이전
국제생명	"	전부계약이전	4,352	"	삼성생명으로 이전
고려생명	"	전부계약이전	2,086	"	제일생명으로 이전
태양생명	"	전부계약이전	2,792	"	흥국생명의로 이전
서울보증 보험	'99.6.4.	경영정상화 (이후 매각)	102,500	"	매각 추진 중 (현재 공사 보유지분 79.56%)
대한생명 (現 한화생명)	'99.9.23.	경영정상화 (이후 매각)	35,500	"	한화그룹이 경영권 인수 (현재 공사 보유지분 10.00%)
국민생명	'99.10.29.	지분매각	3,347	"	SK생명과 합병
태평양생명	"	지분매각	3,337	"	동양생명과 합병
두원생명	'99.10.29.	전부계약이전	12,549	"	대한생명에 계약이전
삼신생명	'00.11.24.	전부계약이전			
현대생명	'00.12.22.	전부계약이전			
동아생명	'99.11.3.	지분매각	14,387	"	금호생명과 합병
조선생명	"	지분매각	1,276	"	한국생명과 합병
한덕생명	"	지분매각	4,015	"	SK생명과 합병
한일생명	'00.12.22.	전부계약이전	266	"	KB생명(신설)으로 이전
대한화재	'01.3.6.	지분매각	510	"	대한시멘트가 인수
국제화재	"	지분매각	740	"	근화제약이 인수
리젠트화재	"	전부계약이전	2,425	"	5개 손보사로 이전
대신생명	'01.7.12.	전부계약이전	1,393	"	녹십자생명(신설)으로 이전
그린손보		전부계약이전	226	예보기금	MG손보(신설)로 이전
MG손보		전부계약이전	400	"	우선 가교보험사(예벌)로 이전 후, 전부계약이전, 매각 또는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 추진 중

* 계약이전 총 12건 중 ①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지원 10건, ② 예보기금 지원 2건

【참고자료 2】 MG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MG손해보험 향후
처리방안(2025. 5. 14. 금융위원회 발표) 중 계약이전 방안 세부내용

<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 세부내용 >

가교보험사를 이용한 계약이전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MG손보]	→	[가교보험사]	→	[손보사]
기존 보험계약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예보 · 주요손보사 공동 운영	준비기간 1년 내외	주요손보사로 최종 계약이전

- ① (가교보험사 설립) 가교보험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사로 설립하며, 신규영업 없이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② (1차 계약이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의 모든 자산·부채를 신설되는 가교보험사로 이전한다.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함으로써 계약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전산시스템도 이전하여 계약이전 직후부터 안정적인 계약유지 ·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 ③ (가교보험사의 경영) 가교보험사의 목적이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인 만큼,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공동 경영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 방침의 공동 결정 등)한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교보험사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 ④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기존 계약의 보장범위 · 수준을 가교보험사에서 동일하게 보장하여 보험계약자를 온전히 보호한다. 보험계약 유지 관리 등 계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은 MG손보 직원 중 일부를 가교보험사가 채용하고, 5개 손보사가 일부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형태로 충원할 계획이다.

⑤ (최종 계약이전의 준비) 가교보험사 운영기간 중 **최종 계약이전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이관 작업** 등을 추진하며,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가교보험사의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계약 배분 및 자금지원 기준** 등을 마련한다.

⑥ (최종 계약이전) 전산 시스템 등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면, 각 손보사 이사회 동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최종 계약이전을 실시**하고, 사전에 합의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각 손보사 앞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 1차 계약이전은 25년 2~3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은 '26년 4분기 중 완료 전망

문 의 처

02)6788-5104